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6
----------	------

2021. 02. 2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2. 3. 김 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1. 2. 9.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2. 26. 상정·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 경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의 경우 그 동안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학교 자체적으로 자재 구매, 건축설계 의뢰 등을 각각 진행해 오고 있어 예산의 낭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고,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내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축조 신고대상의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을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7조제3항, 안 별표2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인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에 대하여 그 간 ‘허가’를 통해 설치되던 것을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자 김정 의원이 발의하여 2021.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

〈축조신고 후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대상 확대〉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설치하는 것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건축법」 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가지의 경우와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할 수 있음.(관련규정 검토보고서 붙임-1. 참조)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비교 (법 제20조, 영 제15조)〉

허가대상	신고대상																												
<p>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p> <p>【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가설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 4층 이상인 경우 ·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p>※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7조제3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용도</th> <th style="width: 15%;">구조</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5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 새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td> </tr> <tr> <td>제품야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 이하</td> <td>·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내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철골조립조</td> <td>300제곱미터 이하</td> <td>·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td> </tr> <tr> <td>공연장 매표소</td> <td>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td> <td>5제곱미터 이하</td> <td></td> </tr> <tr> <td>생활폐기물 보관함</td> <td>경량철골조</td> <td>100제곱미터 이하</td> <td></td> </tr> <tr style="border: 2px solid blue;"> <td>차양시설·비가 리개시설</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 새시	30제곱미터 이하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내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 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 새시	30제곱미터 이하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내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 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시설설치 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 없이 축조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함.

또한 허가대상인 경우 가설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제한 적용을 받지만, 신고대상인 경우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제사항 (검토보고서 붙임-2 참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예정도로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38조(건축물대장) 2. 시장의 공지·도로의 차양시설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3. 위 1,2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가설건축물(건본주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5조, 제38조~제42조, 제44조~제47조, 제48조~제50조의2, 제51조~제54조, 제54조~제58조(건폐율, 용적률 등), 제60~제62조, 제64조,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법 제48조·제49조 배제 :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법 제61조 배제 : 정북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별표2의 도서 · 건축사가 도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대지인 경우) · 신고대상(제2호 및 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음
사용승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사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없이 축조신고만으로도 사용가능

-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우천 시 보행안전,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인데 반해,

- 그 간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품 구매 이외에,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별도로 거치는 등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학교측에 부담을 야기하여 왔고1),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여유가 없는 학교의 경우 설치 자체가 어려워 학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임.

-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2)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데,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도 이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시설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비가리개시설 설치 사례〉

재래시장 사례 (신고대상)	학교 사례 (허가대상)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9282, 2020.09.09.)에 따르면 “비가리개 시설은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에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덮은 구조로 학교 내 설치하는 대부분의 비가리개 시설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으로 구매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 축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설계자가 요구되므로 물품 구매 이외에 추가 설계용역 계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함.

2) 조례 제17조제3항 중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포함 시 비전문적인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학교 시설 안전문제 발생 우려와, 건축물 규모제한 배제 등으로 무분별한 가설건축물이 난립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다만, 학교 내 시설의 축조신고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³⁾, 학교 시설의 특수성, 학교여건 및 학생 보행 특성 등에 대해 감독청의 관리가 가능하고,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안전구조와 관련된 최소기준은 따라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로 한정하고 있고, 감독청이 예산낭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신고를 통해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예산절감 등 교육행정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제17조 제3항 관련)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내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가설건축물) ①·② (생략)</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용도</th> <th style="width: 15%;">구조</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5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새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rowspan="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td> </tr> <tr> <td>제품아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철골조립조</td> <td>3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공연장 매표소</td> <td>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td> <td>5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생활폐기물 보관함</td> <td>경량철골조</td> <td>1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p>제17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 2의2]</p> <p style="text-align: center;"><u>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제17조 제3항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용도</th> <th style="width: 15%;">구조</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55%;">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td> <td>컬러알루미늄새시</td> <td>30제곱미터 이하</td> <td row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 </td> </tr> <tr> <td>제품아적장</td> <td>철골조립조</td> <td>500제곱미터 이하</td> </tr> <tr> <td>기계보호시설</td> <td>철골조립조</td> <td>300제곱미터 이하</td> </tr> </tbody> </table>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 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 																																				
제품아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공연장 매표소	목재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 이하	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 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 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생활폐기물 보관함	경량철골조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비 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 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준 재래시장 및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접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 는 것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 치하는 것